

자판기 영업신고 시·군·구 단위로 일괄신고하세요

-자판기 영업신고 범위 확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건의 및 검토의견 제출을 진행했던 '자판기 영업신고 범위 확대' 관련 법률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에 반영되어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공포에 따라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운영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포된 시행규칙은 3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많은 관련업체들이 영업신고 간소화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이 갖는 의의

"자판기 영업신고를 건건이 개별신고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같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들도 층층별로 개별신고를 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 아닌가요. 자판기 관련업체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피해를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지난 1999년 협회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영업신고 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역설했다. 자판기 관련업체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며 개선 필요성을 반영시켜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선시키게 된다. 이때부터 자판기 영업신고는 동일 읍·면·동 안에 식품 자판기 2대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일괄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체계개선

은 동일건물 또는 인접건물 내 일괄신고의 범위를 포함했던 당초 안보다 대상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자판기 산업체 입장은 적극 수렴한 결과였다. 이후 자판기 영업신고는 동일 읍·면·동의 경우 일괄신고 체계로 바뀌어 운영자들의 행정낭비를 덜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기준도 더욱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자판기 운영의 지역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상황에서 영업신고도 더욱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커져갔다. 특히 자판기를 다량 운영하는 중대형 운영업체의 경우는 더욱 절실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자판기 영업신고 범위 확대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관련 부처를 통한 영업신고 확대 건의 및 검토의견 제출을 통해 이번 영업신고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를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이번 영업신고 범위 확대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우선 자판기 영업신고를 광역시의 경우는 구 단위로, 일반시와 지방군의 경우는 해당 지역 전부들 대상으로 일괄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영업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같은 광역 시는 한 구에 있는 자판기들은 한꺼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동은 다르지만 00구에 100대 자판기를 설치 한다 하더라도 한번에 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일반시의 경우는 한 도시 전체의 자판기를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춘천시, 강릉시, 평택시 같은 경우 한 도시에 설치되는 자판기 전체를 일괄신고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북의 완주군에 있는 자판기라고 할 경우 한꺼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이같이 영업신고가 간소화되게 됨에 따라 운영업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앞으로 영업신고의 편리성이 높아지게 되어 운영업체들이 자판기 운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신고한내찰조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 ③주소 ④명칭(상호) ⑤읍소·재지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⑥영업의 종류 (전화)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수수료 신고인내찰조	
신고인 (서명 또는 약인)			
1. 시설배치도 2. 제조방법설명서(농어민생산단체제) 적용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시설사용제어서식품운반법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업데이트 경우에 한한다. 구 분 일자 결과 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약인) 부 ☐ 건축물대장등본 확 ☐ 도시계획확인원 인 ☐ 교육원증			
※신고안내 (및쪽)			
제출하는곳	신고관청 수수료 1만원	처리부서 처리기간	식품위생과 복별시: 7일 광역시·도: 8일 시·군·구: 5일, 3일(식품소분·판매업과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경우)
○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의 대상 1. 식품운반법 2. 식품소분법 3. 식육관제법 4.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5. 건강보조식품판매업 6. 식용유음판매업 7. 식품자동판매기설업 8. 유동점판매업 9. 우유류판매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식중독수입판매업 12. 기타식품판매업 1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업·폐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경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95. 8. 31>			(및쪽)

▶ 영업신고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법률

제27조 (영업의 신고)

③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시·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 Q&A

Q. 앞으로 서울시 광진구와 송파구에 다양한 자판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광진구와 송파구로 나누어서 2건만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판기 운영대수에 관계없이 광진구에 운영중인 자판기들은 한 장의 영업신고서에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Q. 충북 청주시에서 자판기 운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업신고를 하면 되나요?

A. 청주시내에 설치되는 자판기들은 한꺼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별로 따로 나누어 신고할 필요없이 한 장의 영업신고서에 전 자판기를 기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